

자동화재탐지 설비 구성요소 (Automatic alarm system)

Data Sheet No. NKFS- 100-22

제어반(Control Panel)

 N_2 시스템의 관련된 기구로부터 신호를 받고 출력 하여 제어하는 장치로서 화재감지의 인식, 밸브작동, 경보 및 정지, 방출확인 및 정지, 화재복구, 전원시험 등이 전체적인 제어를 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 9조(제어반 등)]에 명시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 한다.
-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한다.

방출표시등(Discharge Lamp)

질소가스가 방출되는 경우 해당방호구역의방출을 Lamp 로 점등하게 된다. 일반형, 방수형, 방폭형으로 구분되어 실의 특성에 맞게 설치하며, 방호구역별 출입구 마다 설치한다.

수동조작함(Manual Operation Box)

질소가스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방호구역별로 출입구마다 설치된다.

화재감지기 (Fire Detector)

화재감지기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한다.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질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 13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에 명시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자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 되도록 한다.
-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한다.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화재안 전기준(NFSC 203) 제 7조 제 1항 단서의 각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 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저은 자동화재탐 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제 3항 제 5호. 8호 내지 제 10호의 규정에 따른 바닥 면적으로 한다.

음향경보장치(Sound Signaling Device)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 14조(음향경보장치)]에 명시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 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할하는 것으로 한다.
- ●소화약제의 방사개시후 1 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증폭기 재생 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장소에 설치 한다.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제어반의 복구 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수 있는것으로 한다.

표지판(Warning Plate)

방호구역 및 방호대상물에는 청정소화약제 설비가 작동됨을 알리는 경고 및 위험표지를 해야한다.

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 15 조(자동폐쇄장치)]에 명시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환기장치를 설치 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사 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 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의 높이의 3 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사되기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한다.
- ●자동폐쇄장치인 피스톤 릴리즈는 가스압력에 의하여 작동 되는것으로서 당해 방호구역의 선택밸브 2 차측 배관에서 조작동관을 분기시켜 선택밸브를 통과하여 분사헤드에서 방사되는 가스의 압력이 그대로 동관을 따라 피스톤 릴리즈를 작동시켜 개방한다.

